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2일(수)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6)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3)

상정된 안건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1) 6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1) 6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7) 6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6) 6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2) 6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6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6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6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6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1) 6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8) 6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1) 6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8) 6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3) 6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1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는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회의 시간을 잘 엄수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니다.

그러면 첫 회의이니 만큼 위원님들 간에 간단히 인사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첫 회의인데 김형연 위원님 어제 국회의원 선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어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오늘은 왼쪽부터 해서 쪽 순서대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간사님이신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부탁 올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 민생을 위한 그런 소위원회니까 좋은 의견 잘 따라서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반기부터 계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전반기부터 호흡을 잘 맞춰 왔던 박상혁 위원장님 잘 모시고 나머지 정무위원님들과 좋은 법안 많이 만들고 치열한 토론하며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송언석 위원** 반갑습니다. 송언석입니다.

박상혁 소위원장님 모시고 금융 관련해서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가 조금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송언석 위원님이 생소하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떡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법안1소위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장님 잘 모시고 관련된 법안들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법안도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항상 첨예하게 얽혀 있고 또 굉장히 파급력이 큰 법안들이 정무위 1소위 관련 법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고맙습니다.

최은석 위원님은 이제 1소위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2소위 같이 하시는……

○**최은석 위원** 아니, 잠시 사보임하고 이렇게 또 중요한……

○소위원장 박상혁 사보임하고, 최은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은석 위원 최은석입니다.

사실은 1소위 이렇게 정식 그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가끔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 있을 때 사보임을 통해서 가끔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상혁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민생을 위한 법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리베로시군요, 리베로?

○최은석 위원 예.

○소위원장 박상혁 어제 취임 선서하신 김형연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혁신당 국회의원 김형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법률가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법안을 꼼꼼히 살피고 경청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첫 회의인 것으로 아는데 저는 국회가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일 위원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어제든 위원님들 많으신데요. 저도 1소위, 2소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민생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을 또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배치한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잘 나눠서 국민들의 이익들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열하게 같이 얘기해야 부분도 있고 어떤 산술평균을 내야 될 자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해서 법안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일 좀 하는 상임위구나 이런 얘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잘 모시고 여기 또 제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잘 따라서 배우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홍배 위원 박홍배 위원입니다.

금융산업 현장에서 약 2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서 금융산업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법안들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많은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조금 더 밀도 있게, 오늘도 한 사오십 건 정도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달랑 2건이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다음 회의부터라도 좀 더 많은 법안들을 밀도 있게 심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감사합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소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 그리고 김형연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1소위에서 법안이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다음으로 우리 정무위원회의 터줏대감이신 민병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이 곳, 이 방에서만 제가 상임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무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법안1소위는 별로 못 한 것 같습니다. 1소위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인기가 있는 소위라서 제가 대체로 2소위를 하다가 이번에는 1소위를 합니다.

어제 여야 정책위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쟁점이 없는 부분들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깊게 논의하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는데 흠플러스가 회생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된 지 지금 1년 6개월이 됐고 내일모레 9월 4일이면 회생기한이 법적으로 마치는 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민생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깊게, 그렇지만 늦지 않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 보면 소위가 솔직히 가장 중요한데요. 소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그런 1소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민병덕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흠플러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의문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들이 여야 위원들이 함께 다 공유하고 있다는 점들이 잘 전달되어서 오늘 관계인집회에서 좋은 결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 언론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석 위원 언론인도 있어, 여기?

○서일준 위원 조금 전에 나갔어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위원분들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1)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1)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7)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6)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2)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1)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8)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8)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3)

(10시21분)

○소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이 법률안은 사전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미 저희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논의가 좀 핵심적인 의미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곽현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5건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주요 내용 표에서 보시면 강준현 의원, 김동아 의원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보증계정의 보증 한도 상향, 진흥원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것이고, 이인영 의원, 송언석 의원, 김태년 의원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 또는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법안소위에서 올해 세 차례 상정 및 축조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논의 경과를 자료 2쪽에서 3쪽에 정리하였고 당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련 컨설팅 용역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용역 완료 후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각 항목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7쪽에서 입법 배경 등 총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간·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해 오고 있으나 재원의 안정성 및 공급의 탄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법상 금융회사 출연 규정이 2026년 올해 10월 8일자로 종료되고 또 정부재원이 매년 편성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에 별도의 손실보전 근거가 없어 재원의 장기적 안정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탄력성 측면에서는 정부 출연금이 설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특정 상품에만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따른 상품별 탄력적 운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에 강준현·김동아 의원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것이고, 이인영·송언석·김태년 의원안은 금융회사 출연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 또는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논의 이슈는 법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냐 여부가 될 텐데 9쪽에서 보시면 기금 신설 요건인 재원의 목적사업과의 연계성,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기존 일반회계·복권기금 사업 대비 효과성 등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기획예산처에서는 기금 신설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현행법상 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금 근거 조항은 2026년 10월 8일까지 유효

한데 이인영 의원안은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이고, 송언석 의원안은 유효기간을 2031년 10월 8일까지, 김태년 의원안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서민금융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이익 환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어느 안을 채택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논의 후 이후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처음 논의면 거기서 멈추는 게 맞는데……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일괄 쪽 말씀드리고 한 번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상혁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가…… 물론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이 많긴 하지만 전·후반기의 연속성이라는 측면과 이미 세 차례 논의를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전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하실 거라는 생각을 통해서 쪽 일괄 보고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그러면……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연구용역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의사진행발언……

○이강일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상혁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여기 연구용역 나가 있던 부분 아닌가요? 그거 보고 판단한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 당시에든 논의가 있었지만 연구용역 자체가 물론 타당성 검토도 일부 들어 있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부분도 이미 들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강일 위원 왜냐하면 여기 그 내용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래서 지금 소위자료 맨 마지막 47쪽입니다.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 놨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소위원장 박상혁 이거를 47쪽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쪽 드리고 나서 마지막 47쪽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이강일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 그걸 감안해서 들으시라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정하는 부분이 그 연구용역 나온 걸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자고 이전에 다 논의가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 자료가 오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고맙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현재 진흥원 내 운영 중인 서민금융보완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을 기금 내 계정으로 이관하여 관리·운용하려는 것입

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금을 신설한다면 자활지원계정으로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별도 분리할지 여부와 분리할 경우 재원 추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반기 법안소위 심사 시에는 김동아 의원안과 같이 3개 계정으로 운영하고 민간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료 16쪽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회계 등에 관한 것으로 그 주체를 진흥원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기금의 운용 및 회계·결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즉 기금은 금융회사 예치, 국채·지방채 및 금융회사 발행, 보증 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며 예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결산상 이익금은 전액 적립하되 손실금 발생 시 해당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의 정원 및 위원 임기 또는 세부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위촉직 구성에 있어서 현행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6명을 소비자보호 또는 기금관리운용 전문가 3명 그리고 출연금 누적 규모 상위 3개 금융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회사 등 임원·집행간부 3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 위원을 10명 이내로 하며 기금 관리·운용 전문가 및 기금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19쪽, 기금의 관리·운용 기관인 진흥원의 정관에 기금·계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기금·계정의 관리·운용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참고로 현재까지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현행법상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진흥원이 발행하던 채권은 진흥원의 자체 부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금 내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기금 내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보증배수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상향하고 구상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보증계정 재원 종류에 휴먼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명시하고 그밖에 계정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민금융보증계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데 보증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으로 이관하고 기존에 자활지원계정에서 수행한 보증 사업을 보증계정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진흥원의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진흥원이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교육·정보제공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진흥원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임원 연대 책임은 상법상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흥원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진흥원 임원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직원 손해배상책임 또한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7쪽 표에서와 같이 전반기 법안 심사 시에 상법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을 추가로 하는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에 따라 관련 조문에 주체, 명칭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사업수행기관 지원, 기부금품 접수의 주체가 진흥원이라는 점에서 39쪽·40쪽 수정의견과 같이 진흥원 또는 기금이 아니라 진흥원으로 수정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부칙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2027년 1월 1일로 하고 있는데 기금 신설의 경우 우리 위원회 의결 이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27년 1월 1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금융회사 출연금 근거 조항의 경우 올해 10월 8일 일몰이 종료되기 때문에 공포 후 즉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관련 경과조치나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추가로 43쪽에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는 전반기 논의 때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 요약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세 번 정도의 논의를 해 주셨고요.

지금 고금리와 물가 등으로 서민금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에 따라서 금융회사 출연료 등과 재정을 통해서 한 반반 정도 자금을 받아서 자금 공급을 해 왔습니다만 일몰 조항이 10월 8일 날 종료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7억 정도를 저희가 금융권으로부터 받고 있는

데 월 한 500억 정도를 못 받게 되면 일단 서민금융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서민금융은 단년도 예산에 따라서 매년 정부의 재정 출연을 통해서 운용해 왔는데 보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을 통해서 서민금융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처리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각 부분별로 정부 측 의견들이 조금은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논의 후에 정부 측에서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세 번의 논의 과정에서 그때 여야 위원들께서 대부분 합의를 해 주셨고 그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현정 위원님 하시고 최은석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다른 분들 하셨는데 조금 늦게 오셔 가지고 간단한 인사말씀 짧게 해 주시고, 첫 회의니만큼.

○김현정 위원 전체회의 때 인사 한번 드렸었는데 법안1소위에서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상반기 때 우리 정무위는 그래도 여야 간에 합의를 잘 이끌어 왔던 그런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들 계속 이어 가서, 법안1소위가 특히 하반기 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야 간에 잘 숙의하고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는 전통을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이 관련해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야당 위원들께서 용역과 관련된 결과, 그때 중간 용역 결과만 나와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런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 의견이 지금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거지요?

○소위원장 박상혁 47페이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부위원장님, 자료에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여기 야당 위원님들이 바뀌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때 과정하고 핵심적인 내용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재정부, 지금은 기예치지요. 현재 이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 정부안을 만들었고 당정 협의를 거쳐서 법안은 발의를 했습니다.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에 따라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 기금

이 통과되게 되면 제대로 된 기금 운용을 위해서 아주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의 운용체계라든지 세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회계나 리스크관리나 이런 것들, 특히 이것에 대한 B/C 분석 등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착수해서 연말경에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정책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의 안정화·고도화를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고 재원 편성도 금융회사와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구조가 타당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편익과 비용 분석 결과 1.1로 나왔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실무자들이 최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마치셨습니까?

○김현정 위원 예.

○소위원장 박상혁 다음으로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일단 기금의 설치 여부는 불문하고 10페이지에 보면 금융회사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게 21년도 법 개정할 때 금융기관이 확대된 것 같아요.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뒤서 5년으로 규정한 건데 이번에 갑자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하게 하자는 안이 지금 금융위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을 때 당시에 규정했던 여러 가지 근거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보면 어쨌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결국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5년 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아마 이런 취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효기간을……

우리가 좀 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연장해서 2031년까지 한 5년 정도 더 연장해 보고 그때 가서 전체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갑자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이렇게 영구히 출연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들이 상황에 맞나, 이런 것들 좀 더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답변……

○소위원장 박상혁 답변이 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김형연 위원님.

○김형연 위원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기금의 재원 중에 금융기관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 출연의 시한을 일몰제를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의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가가 뭐냐? 아무 대가가 없는 거거든요. 일종의 무보상의 강제 수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금융기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출연을 강제하려고 하면 공익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익 목적을 먼저 확인을 해야 기금 설치의 유효성도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효기간 연장 일몰제도 삭제를 할지 여부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일단 저희가 서민금융을 한 5조~6조 정도를 공급할 때 이분들의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기존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을 받기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한 돈을 기초로 해서 대부분 100% 정도 보증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 줬을 때 손해를 입을 때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 주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이런, 원래는 취급하기 어려운 자금인데 이런 공동의 보증제도를 통해서 서민들한테 자금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융회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대출을 해 주더라도 손해가 났을 때, 연체가 생겼을 때 대위변제를 받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봐서도 이분들의 이런 보증제도가 없으면 금융회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에서 원활한 공동체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오히려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유사한 예에,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 보증제도, 주신보 주택보증신용제도 다 비슷한 유사한 제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주택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것은 서민금융에 지원되는 거니까 공익적 목적은 저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신동욱 위원님도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잠깐, 첫 회의라서 인사말씀 짧게 하시고 해 주시면……

○**신동욱 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기금 설립 요건이 맞는지, 기재부에서는 과거에 반대 의견을 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 위원님들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부처 간 협의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1년도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기금 신설 요건의 수용을 저희가 협의를 했고 관련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등이 기재위에 동시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큰 이견이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당시에는……

○**신동욱 위원**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기재부에 이것은 기금 요건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되는 걸로 하자 이런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그 당시 기재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저희가 만든 법안의 정책 내용을 보면 금융권의 출연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금으로서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요. 관련해서는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관련성이 있고 신축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며 재원의 안정적인 측면도 부담이 되어 있고 기금 도입의 효과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단년도 예산보다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이야

기를 했고 참고 자료, 소위 자료 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는 사실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하는 것을 기금의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로 들려서 어차피 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인데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위원장님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출연료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 주신보에서 주택관련 보증제도 각종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보증제도는 금융권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아 가지고 그 금융권이 대출해 주는데 보증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보다 대출을 안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없으면 자금 공급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정부가 재정을 넣어서 그걸 보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민금융은 크게 보면 통상 한 8000억 정도의 재원을 통해서 오류 조를 공급하고 있는데 재정에서 한 절반 정도 해서 한 사오천 억 공급을 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통상 사오천 억 정도 하고 있는 굉장히 조화로운 자금조달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1년에 한 6조 원 정도의 서민금융, 어려운 서민들한테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박홍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홍배 위원** 기금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는 목표하에서 이런 법안들이 제시되고 또 컨설팅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볼 때 정책적 타당성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편익비용 분석상 1.1 정도의 타당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지요?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실장님 이든 이사님이든 답변하실 수 있는 분께서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자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던 과거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재원의 대부분, 절반 정도가 정부출연금에 의해서 그리고 절반 정도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 베이스로 과거에 0.03, 0.06, 0.1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데 서민들이,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서 서민금융 상품을 더 공급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했는데 출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전년도에 결정한 출연금이 소진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까?

○**서민금융진흥원상임이사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유재욱 상임이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기금에서는 출연된 상품별로 다 목적성을 가지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코로나19 상황 같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공급을 확대하거나 더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어서 하고자 해도 재원들이, 쉽게 말하면 꼬리가 딱 잡혀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리고 새로운 상품뿐만 아니라 혹시 기출연된 정부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부족해 가지고 정부에서 서민금융 계정에 추가 출연을 하기로 추경을 한 사례도 있습니까?

○서민금융진흥원상임이사 유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가 재원들을 수급하고 그랬습니다.

○박홍배 위원 결국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특히 서민대출상품, 햇살론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몇 가지의 서민대출상품들의 경우에는 사금융 고리대금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망 장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매해 정부가 결정해서 공급하는 출연금 그리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 베이스로 받아서 운영하는 기금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니즈에서 이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서민금융진흥원상임이사 유재욱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 저는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대표적인 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새희망홀씨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품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들이 사실은 신용평가 등급을 통과하기 어려운 약간의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공급하면서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본다는 것은 은행의 전체적인 자산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걸 계속 두 개에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경영평가, 자본비율 이런 데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상품들까지도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과 같은 보증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추가로 이 상품을 취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분만큼을 출연받아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부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저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설치하는 쪽으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나오셨길래 제가 잠깐만 드리고 송언석 위원님 질문드릴게요.

이게 과거에, 저는 정부나 이런 거 상관없이 서민금융이 오늘 기금과 별개로 정신 자체가 처음에 출발한 게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미소금융에서부터 서민들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을 휴면계좌나, 그 당시에는 심지어 대기업·금융회사 이렇게 해서 나중에 2016년도에 서민금융이 통합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신들이…… 물론 그 안에서의 내용들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여야 상관없이 서민들이 금융으로부터 아예 소외되거나 그로 인해서 사회적 공동체가 붕괴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민금융진흥원상임이사 유재욱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서 미소금융으로 직접 대출로 출발을 하다가,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그게 보증상품으로 좀 더 확대되면서 적은 재원으로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면서 2016년도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예,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 다 좋은데 저는 이것을 굳이 왜 공공기금으로 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견해를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말하고 있는 공공기금에 적합하지 않다 또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민금융진흥원 상임이사님이 말하셨나요? 누가 나오셨다고……

○소위원장 박상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는 취지를 봤을 때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수행하고 있는 몇 가지 개별 사업들 간에 재원을 서로 융통하기가 현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인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한 건가요?

○서민금융진흥원상임이사 유재욱 예,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데 그 주장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공공기금으로 해도 전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금이 되면 현재 우리 구조상으로는 매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기금운용계획에 있는 정부안이 이 자리에, 정부위에서 논의하고 예결에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고 나면 그 안의, 예를 들어서 햇살론, 햇살론유스, 일반보증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하나의 개별 사업으로 픽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연도 중에 집행하게 되면 A, B, C 사업이 있을 때 A 사업에는 돈은 있는데 집행이 잘 안 되고 B 사업은 돈보다도 수요자가 더 많아 가지고 돈을, A에 있는 재원을 B로 끌고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금융성기금 같으면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조항을 노리고 공공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정확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송언석 위원 저분한테 먼저 좀 듣고.

○소위원장 박상혁 간단하게 하시고 권대영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상임이사 유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정 간의 상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원의 탄력적인 운영 때문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데요 지금 그 답은 틀린 답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계정이 서로 다르면 계정 간에는 기금운용계획 만들어 준 국회에서 심사한 범위를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계정 안에.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3개인가 계정이 있잖아요. 서민보증계정 있고 자활계정 있고 또 자산 형성인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계정 안에서 사업이 있고 거기에 유보금이 있어야만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빠져 있는 유보금을 가지고 사업을 30% 범위 내에서 더 있어 살 수 있다는 거지 계정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꾸 탄력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본 취지와 법 규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금 설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주장하고 있는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도 배치되고 오히려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과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 경직적으로 운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걸 자꾸 공공기금으로 하

겠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아까 조금 전에 김형연 위원이 말씀하셨나, 무보상의 강제수용이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썼는데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것은 모든 것이 조세의 형태로 들어와서, 세원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에 또는 특별회계에 재원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에 대해서 또 비은행권에 대해서 출연금을 강제해 가지고 그 돈을 정부 기금에, 정부 재정에 세입으로 이렇게 쓰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공기금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그런 재원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금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보니까 10월 8일인가요? 이게 일몰된다고 하는데 일몰되면 당장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몰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저는 10년 정도 연장하는 법안을 내 놔는데 이 연장하는 것을 처리를 하고 공공기금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법안 발의하신 취지.

권대영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방금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전용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실무적으로 답변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왜냐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상품이 한 열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햇살론유스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같이 재정이 들어오는 자금은 예산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것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소금융에서 전출을 받거나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전출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 적절히 배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에서 꼬리표를 단 부분은 국회에서 심의한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나머지 금융회사 출연금은 서민금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상품을 운용한다는 그런 취지를 아마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이 옳다는 말씀이고 제가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금으로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걷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에 보증자리론을 공급하는 주택신용보증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출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신보라고 지역신용보증기금 해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주택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공공기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10월 8일 일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7억, 월 500억 이상의 자금 차질을 정부로서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짧게.

○**송언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진흥기금이라든지 농어구목돈마련저축이라든지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에 출연금이 들어가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들은 특정한 산업이라고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으로 해서 그런 관련된 단체·기관으로부터 돈을, 출연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서민금융 이 부분은 대상이 특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이 부분을 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박민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민규 위원** 먼저 소위 하면서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전임 정무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세 번의 소위 결과를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3월 31일 강명구 위원께서 안정기금 관련된 컨설팅 용역 결과를 보고, 물론 확인 이후에 단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고 그 이후에 4월과 5월에 연속해서 있었던 소위에서 강명구 그다음에 강민국 위원께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점을 참고를 하고 우리가 오늘 컨설팅 결과를 봤는데 혹시 이 컨설팅은 주관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 겁니까, 금융위에서 한 겁니까,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했습니다.

○**박민규 위원** 금융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는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 당시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금화에 관련된 검토가 좀 더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절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족됐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안으로 결정이 되면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 경직성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향과는 안 맞지 않냐에 대해 권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답변 주신 걸 이해하기에는 기본 베이스는 꼬리표에 있는 기금들대로 하되 특히 민간 출연금이라는 다소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으니 맡겨둬도 좋고 기금으로 가도 거기에 대한 경직성으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또 송언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기금을 운영해 왔던 여러 가지 산업 측면에 대해서, 수혜 대상자와 또 거기에 관련된 출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것이 다소 강제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출연금에 대해서 국회 통제 없이 공적기관이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경직성과 금융 파산 또는 금융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많아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 휴면계좌로 시작했던 상품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운영되면서 간접대출 제도로 인해서 확대가 됐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운영돼 왔던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을 넘어서서.

그런 상태에서 불법 사금융 또는 금융 채무로 인해서 다시 회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소리 내지 못하는 수많은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기금화되는 것이 맞고 또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17억, 한 달에 500억이라는 기금이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 하기 위해서 10월 8일까지 일몰 전에 국회가 해야 될 부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송언석 위원님께서도 전향적으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까 권대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화가 됐을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 상품별 자금 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금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현재 서민금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연 7조 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가 한 3000만 명 이상이고 차주가 한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대출을 받은 분들. 그런데 하위 신용등급 20% 이하가 약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정책 대상자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서민들, 금융권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 또 청년들 중에 일자리를 못 구하는 미취업 청년 이런 사람들, 특히 더 나아가면 사회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해서 이 영역이 저희가 보기에 한 사오백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정도의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화되지 않은 측면에서 그동안 소외를 받아 왔던 측면이 있고 이 철학은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 때의 미소금융에서부터 쭉 시작돼서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을 만들고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한 번 더, 이것을 기금화시키는 그런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한테 기금과 출연료 근거를 주시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마지막으로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금융이 사람을 살리는 혈관의 혈, 피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일들을 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과 비슷하게 기본권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즉 금융기본권이 있어야 된다는 요즘의 주장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본권으로 하지만 금융에 있어서도 지금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권리를 승격시켜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민병덕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훨씬 강화해야지 우리 공동체 모두가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인데 여기에서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 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전의 설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실 게 은행에

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모두 다 힘든데 은행이 지금 전반기에 이자 이익을 얼마 얻었는지 아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통상 한 20억, 이십몇억……

○민병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32조입니다. 전반기가 32조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자 수익만……

○민병덕 위원 은행권이 32조 이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2.5에서 2.75로 올랐다가 또 며칠 전에 3.0으로 올랐습니다. 은행권들의 수익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대부분의, 기업을 포함해서 대출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려움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중에서 취약한 계층, 저신용·저소득 계층은 진짜 금융이 그림의 떡인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상황을 보고 일몰로 5년간 한번 해 보자라고 한 것이고 5년간의 성과를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5년간의 성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 용역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그것을 또 10년으로 또 5년으로 늘리자라는 것은 금융을 그림의 떡으로 느끼는 저신용·저소득 분들은 또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금 형태로 해서 보호하자, 그래서 금융 기본권을 강화하자라는 취지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민병덕 위원 그러면 그것만 조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대출금의 1000분의 1, 즉 0.1%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민병덕 위원 0.1%를 출연금으로 내면 은행에게는 손해만 오는지 아니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이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대출 공급을 못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 공급을 하게 되면 연체에 빠지는데 이렇게 공동의……

○민병덕 위원 손님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보험……

○민병덕 위원 이분들은 손님으로 끼워 주지도 않았는데 손님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배제에서 포용으로 해서 이분들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손해를……

○민병덕 위원 은행에 갚지 못하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갚아 주는 거니까 보험……

○민병덕 위원 대위변제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우리 사회 공동의 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도 이 출연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협의를 했고 이 정도에 대해서는 금융권도 스스로 감내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냈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명 정도가 공급받지만 특히 금리가 오르

기 시작하면 서민들도 어렵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불법 대부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 받은 재정이 부담하고 받은 민간 영역에서 스스로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감사합니다.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전반기 때부터 심도 깊게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든 기금화든 어떤 경우라도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심도 깊게 논의해서 결론에 이른 것은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조금 보고 판단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씩 다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시켰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서류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한번씩은 전부 ‘연구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동안 스토리도 처음 정무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분들께는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은행의 출연금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가요? 제가 보니까 기록상으로 매년 굉장히 크게 신장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지금 서민금융 내지 신용대출을 모수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 같이……

○이강일 위원 사실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 거의 확정적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아마 대출 증가율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니까, 대한민국 경제성장률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비슷한 서민금융……

○이강일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의도는, 자꾸 길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이러한 사업은 계속 확대가 되면 됐지 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이 출연하지만 대상 자체가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민들한테 대출하는 것 자체가 또 돈을 내는, 출연하는 금융기관들이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내서, 원래 기금을 만들 때 혜택을 입거나 사업을 하는 데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금화하는 데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굉장히 맞고 적합하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나갈 때, 어려운 분들한테 나갈 때 이게 보증의 형태로, 보증금으로 쓰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서 손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혜택은 서민한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출연하는 금융기관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에 국비나 세금이 매칭해서 보증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에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까지 좀 보태서 이것을 은행한테 리스크를 줄여 주고 안정화시키면서 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21년도에 만들어질 때도 그전에 계속 논의가 있다가 만들어진 거고요. 조금 전에 민병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한시 운용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고 했던 부분도 분명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발의도 늦게 해 주셨고 의견도 많이,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견 타당하기도 하지만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가 그동안 많이 진척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은 서로 어떤 정치적인 주제가 아니라 서민들한테 계속 안정적으로 기금화해서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논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것들 자체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 나와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신동욱 위원님까지 하고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처음 왔으니까.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오신 부분을 존중은 하지만 처음 와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가 은행의 문턱을 넘기 힘든 서민들에게 금융 혜택을 지원하자는 그 대전제에 저희가 반대하거나 저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러 가지 논리가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반대가 있으니까 금융기관도 좋은 것이라든 논리를 자꾸 내세우시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금융기관이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대출을 잘 안 해 주는데 이게 기금에서 대신 변제를 해 주니까 서민들에게도 그냥 마음 놓고 돈을 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융기관한테도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제가 보기에 그 논리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그 자체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금융기관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는 방식으로 얼마를 각출해서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돕자는 것과는 별개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소위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을 의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뭉뚱그려서 이것은 서민들을 더 잘살게 해 주는 것이니까, 어려움을 없애 주는 것이니까 하자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성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햇살론 같은데 은행이 각출하는 것도 본질은 사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기금으로 가져가서 정부가 준조세의 형태로 그 돈을 받아서 정부가 운영하겠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기재위에서 작년 11월 달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낸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기재위에서는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기금이 되면 이것은 정부 예산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국

가재정의 일부로 개별 부처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승인·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2025년 11월에 나온 기재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재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민들의 은행 문턱을 낮춰 주자라는 그런 취지만 가지고 이렇게 막 기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야 저희가 왜 은행들한테 4000억만 받으니까? 1조도 받고 2조도 받아서 그렇게 막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국가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소위 기금의 운용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기금의 항목을, 약간 말하자면 전용을 쉽게 해 놓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아름답게만,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라는 소위 얘기하는 장밋빛 미래만……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이 우리 금융권의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에 부위원장님 그럴 거라고 답변하시던데 무슨 근거로 우리 금융권이 계속 이렇게 십조, 수조 원씩의 이익을 얻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 항목에 맞게 금융권에 각출을 해서 하는 현행의 방식이 훨씬 나은 것이다, 저는 처음 왔지만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먼저 권대영 부위원장님 답변 주실 게 있을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우선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재위 의견은 정무위에서 기금 타당성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국가재정법과 부담금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저희 정부 의견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경로를 가지지 않을까 싶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게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기금으로 가면 저희가 좀 안정적인 측면도 오히려 경직성이 떨어질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사안보다는 국회가 그 기금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을 통해서 좀 더 심사하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꼬리표는 더 기금 꼬리표대로 하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또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기금을 하는 것이 일부 국회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조금 더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것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잠깐만, 그런데 국가재정법을 바꾸자는 것이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하고 나서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이 맞지 정무위에서 의결하면 국가재정법을 바꿔 주겠다 이게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법안이 일단 동시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재위에서 정무위로 뿔뿔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상식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문제는 국가재정법을 먼저 개정을 해야지 거기에 부합하는 기금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정무위에서 이것 해 주면 일종의 근거가 되는 모범을 바꿔 주겠다라는 게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은 만약에 기금으로써의 어떤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상혁**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내용은 같은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제가 얘기해요.

○**소위원장 박상혁** 위원님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이강일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 초선이지만 먼저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저격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신동욱 위원** 저격 아닙니다.

○**이강일 위원** 이것 보세요, 제 이름을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신동욱 위원** 그게 무슨 저격입니까?

○**이강일 위원**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을 얘기해야지.

이것은 기금이 되든 안 되든 돈은 걷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만든다고 준조세가 어찌고저찌고 유지된다 하는 이런 표현은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서민 대출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금화하느냐 연장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논조가 아닌 쪽으로 싸움을 붙이셨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금의 전용이 쉽다고요? 기금 하면 전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송언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금으로 가도 전용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좀 잘못하신 거고요. 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것을 운용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했지 기금의 전용이 언제 쉽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 이름 거명하고 먼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아요. 동료 위원님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 굉장히 저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신동욱 위원** 아니,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으니까 하자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강일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어요.

○**신동욱 위원** 무슨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요?

○**이강일 위원** 제가 얘기한 다음에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우리가 논의했으니까 처음 온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이강일 위원 논의는 마음대로 하세요!

○신동욱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강일 위원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이름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이 발언한 것 뒤에서 씹는 것 아니라고!

○소위원장 박상혁 신동욱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신동욱 위원 처음 온 위원들이든 먼저 온 위원들이든……

○이강일 위원 동료 위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동욱 위원 처음 온 위원들이든 먼저 온 위원들이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강일 위원 이 양반이, 진짜. 내가 여기 누구 이름을 얘기해?

○신동욱 위원 그렇게 비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소위원장 박상혁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이강일 위원 아니, 잘못해 놓고도 저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신동욱 위원 처음 왔으니까 너네들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보세요가 뭐야, 그리고 여보세요가? 처음 온 위원들은 왜, 몰라야 되나?

○이강일 위원 이것 보세요!

○소위원장 박상혁 잠시……

○신동욱 위원 어디 지금 처음 온 위원들, 처음 온 위원들 하면서 말이야. 당신 얘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강일 위원 이 사람은, 당신까지 얘기를 하네.

○소위원장 박상혁 그렇지 않아도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도 정회를 하고 간사 간의,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물이 있어요. 위원은 모든 데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깨고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은 경고해 주세요. 어디 처음 온 위원들, 처음 온 위원들 하면서 말이야. 뭘 다 논의를 해요? 지금 왔으면 지금부터 하는 거지.

○소위원장 박상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그것 관련해서 1분만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박상혁 제가 먼저 말씀 올리고……

○신동욱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저도 위원장을 처음 하는 재선이지만 위원장을 처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사회를 좀 더 원활하게 봤으면 아까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들을, 아직 사

회가 원활치 못한 점 동료 위원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오늘 첫 법안소위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아직 낯설기도 하고 합을 맞춰 가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논쟁은 치밀하고 또 민생을 위해서 하시되 꼭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상호 위원님 이름들을 호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간에 오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점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양해와 이런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동욱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그렇게……

○**신동욱 위원** 1분, 짧게 할게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보좌진들도 있고 국회에 나오신분들도 있는데.

다만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저는 어떤 경우든 아직 조금 낯설긴 하지만 동료 위원님들 저격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법안을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의 다름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조금 앞서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강일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을 나눴고 그러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 정무위의 아름다운 전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도 더 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감사합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저도 답사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예, 이강일 위원님도 해 주시지요.

○**이강일 위원** 지난 2년여 동안에 정무위가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을 잘 가졌습니다. 굉장히 경청을 잘하고 만약에 서로가 생각이나 판단이 다르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얘기를 잘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당을 떠나서 굉장히 화합이 잘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임위였습니다.

오늘 저도 불미하게 그걸 바로 지적하면서 좀 언쟁이 있었는데 저도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신동욱 위원님께서 먼저 유감 표명해 주셔서, 정말 훌륭하신 결단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정무위의 전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모든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 중에 서민금융진흥법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쟁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14항까지 이상 9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박현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보유주식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에는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주식 처분명령,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전반기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의무공개매수 요건·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3쪽에서 목차 자료 구성 보시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의무공개매수의 절차·조건·방법 등 그리고 제재수단 근거 마련, 기타 보완사항, 부칙 등으로 구성됩니다.

5쪽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매수등을 통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등을 추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6쪽에서 먼저 입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과 영업양수도 방식의 M&A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다양한 주주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는 이와 같은 장치가 미비하여 일반주주의 자금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 주식양수도에 따라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은 피인수인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이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귀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들은 일반주주가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식매각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6쪽 위쪽의 표를 보시면 요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분 25% 이상으로 규정을 하되 그 밖에 최대주주 요건을 추가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잔여주식 전부 또는 50%+1주 이상에서 기보유 주식을 제외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주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장외거래 시에만 적용하거나 최대주주로부터 선행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안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 천준호 의원안을 제외한 모든 안들이 공통적으로 매수 목적, 유형, 다른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등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에서 요건과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공개매수 요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지분 25% 이상을 의무공개매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강명구·이인영·박상혁·박홍배 의원안은 지분 25% 이상인 최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주주 요건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에 따른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대주주 요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최대주주에 준하는 제2주주가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서 최대주주 요건을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의무공개매수의 적용을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로 한정하거나 최대주주로부터 매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일부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장내거래 또는 최대주주가 아닌 자와의 거래를 통해 주식등을 소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은 의무공개매수 대상입니다.

의무공개매수 대상은 법률에서 잔여주식 전부, 50%+1주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할수록 많은 잔여주주에게 투자자금 회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수기업의 과도한 인수대금으로 M&A가 위축되고 경영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따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입법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가급적 법률에서 결정하되 대통령령 위임이 필요하다면 그 한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 내용이, 도입 시 논의사항이 주로 매수 요건과 대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논의를 하시고 다음 보고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예,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논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제도 요건과 대상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절차·조건·방법 이렇게 나뉘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예컨대 1만 원짜리 계약 주주가 거의 한 2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지배주주만 그것을 획득할 기회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공개매수를 통해서 일반주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OECD 38개국 중의 대부분, 29개국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안이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도입을 했다가 IMF를 맞이하면서 IMF의 요구,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폐지했던 그런 역사를 가진 법이기 때문에 구 증권거래법에서 대강의 틀이 다 갖춰져 있는 제도입니다. 그 법을 기초로 해서 법안이 발의돼 있고, 특히 야당의 강명구 의원님 안하고 여당의 박상혁 의원님 안이 대부분 정부 쪽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안이고.

나머지 법안의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25% 그 트리거 요건은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고 의원님들께서 전부 25%로 해 주셨고 그리고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부를 할 방법도 있지만 50%+1주로 하는 그 두 가지 방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특수한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100%까지 하게 되면 주주들한테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리게 할 수는 있지만 M&A 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이것을 100%까지 하면 기업계에서 인수자금에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97년도 입법례에 따라서 50%+1주로 하되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제도의 운영 과정에 따라 저희가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구나 별척조항은 기존의 공개매수제도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고, 자구 수정을 해 주시면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뒤의 얘기까지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소위원장 박상혁 그냥 박상혁 의원안으로 통과를 해 주시면……

(웃음소리)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강명국 의원안하고 박상혁 의원안하고 합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사실 아침에도 만나서 의기투합을 하고 왔는데……

○이강일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얘기할까요?

○소위원장 박상혁 이강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강일 위원 50+1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표준이라고 할까요, 더 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선진사회에서 가장 랜덤하기도 하고 표준적인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외 규정, 기타 규정도 하나 집어넣고 했거든요.

50+1 이상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으로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일단 우선 50+1로 제도 운영을 해 보되 다수 법안이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롭하기 보다는 정부가 이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면서 혹시 그걸 좀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행령에 위임돼 있지만 당연히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한국에 M&A가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M&A를, 인수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강명구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 박상혁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되 하한을 50%+1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50%+1로 잡아도 그 이상을 할 여지가 있는 법안들입니다.

○이강일 위원 전반기 때 여야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합의가 돼 있어서 제가 이견을 다시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더 강화하자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조정훈 위원님 그리고 박홍배 위원님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에서 간사를 해서 정무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가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이 법안의 취지가 소액주주 보호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다수인데 소액주주 보호와 M&A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정책목적의 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M&A를 활성화하려면 이 법을 만들면 안 되고요.

이 법이 생기면 지금보다 M&A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은 소액주주 보호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게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인 M&A의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목적을 이루자 이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소액주주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공감이고 그러한 정책들이 아마 전반기에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통과됐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제가 활동하던 국제금융 분야에서의 대원칙들과 상당한 충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첫째, 경영권의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들과 공유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액주주를 보호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소액주주는 경영권 참여가 그 주식을 사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 주가가 상승되고 또는 배당주인 경우에는 배당을 통해서, 즉 경영활동을 잘해서 얻어지는 열매의, 자신의 주식의 n분의 1, 그만큼의 이익을 얻는 게 소액주주의 투자 목적이지요. 경영권 참여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을 잘한 것의 열매를 같이 나누는 제도가 주식 제도예요. 따라서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건 내가 산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 현실상 배당도 좀 주면 좋다 저는 이거라고 봐요.

두 번째, M&A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법안을 모든 자구를 다 읽지 않았는데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과 강명구 의원님의 안을 이해하기로는 적대적 M&A까지 포함하는 거지요, 이것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M&A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시장에서 일어나는 제도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M&A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M&A 과정에서 그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새로운 M&A를 취득해서 기업이 가치를 더 불러 나가니까요—또는 아주 단타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그 회사를 정말 쪽쪽 빨아먹고 끝내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까 97년에 아픔이 있는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는, 100%의 경우는 M&A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 회사 주식의 100%를 매수해야 M&A를 할 수 있다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그것은 다 동의하실 거고.

지금 양보해서 50%+1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과연 소액주주의 이익에 큰 틀에서 이익 총량으로 따져서 부합이 되는지 아직은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소액주주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위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치고 빠지는 분들 있지요. 또는 주식의 잠재적 가치, 그 회사의 잠재적 가치를 믿고 사두고 5년, 10년 묵혀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각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의 원칙과 그리고 소액주주의 보호라고 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단타 매매를 하는 소액주주까지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과연 필요한가에 저는 큰 회의가 들고 그건 아니라고 믿고 아마 부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것은 단타 매매가 아닌 중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가장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인데 그것은, 그중의 하나는 보다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주주라 그럴까요? 회사라 그럴까요? 들어와서 회사의 가치를 올려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 가능성을 현격히 제외하는 50%+1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25%면 M&A가 가능한 상황에서 50까지의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M&A를 못 하는 상황, 즉 소액주주들은 더 좋은 경영자가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는 저는 여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작용들이 제 눈앞에 보이냐면 이 법이 현실화됐을 때 50%+1이건 100%건 이 주식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생기면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M&A 할 것 같아’라는 뉴스가 시장에 퍼지면요 이 회사 주식은 폭등합니다, 무조건 폭등하지요. 왜냐하면 M&A가 성사되면 내 주식을 프리미엄 주고 산다는데. 이 프리미엄은 시장의, 그 기업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거품 가격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격이 빠진 뒤에 주주가 그걸 사면요 이 주주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훌륭하신 정무위원님들께서 이런 과정까지 충분히 토론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너무 명백하게 존재해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이 과연 플러스가 되는지 아직 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왜 M&A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경영권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인데 아까 이 법안의 목적은 경영권 보호가 아니라 소액주주 보호라고 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벤처에서 상장이 아닌 엑시트로 마무리하고 싶은 창업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아니지요. 자신의 목표이고 창업 목표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엑시트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M&A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그리고 신중하게 존재하는데 그 마이너스와 이 플러스가 정말로 압도적인 플러스라는 게 저는 아직은, 제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검증이나 수량화나 계량화나 또는 이런 정책을 실행했던 나라에서의 사례들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아까 OECD……

○**조정훈 위원** 아니, 29개 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렇게 25%에서 50%+1이 되면 M&A가 얼마나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조정훈 위원** 영향평가라는 걸 솔직히 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지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선진국의 자료를 보면 전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인수대금을 늘리고 M&A에 부정적이다 하는 그런 최근의 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제도는 법률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 있고 논쟁도 많고 이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 정도의 법안을 일단 여야 쪽에 협의를 드렸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상법의 큰 철학은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주주는 누구나 평등한, 한 주씩을 가지거나 두 개를 가지나 똑같아야 되는데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M&A를 통해서 지배주주가 독식하고 소액주주는 팔 기회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주주평등의 원칙……

○**조정훈 위원** 사실이 아니지요. 팔 기회가 왜 없습니까? 이것은 상장 주식인 경우인데 자기가 새로 들어온 경영자가 마음에 안 들면 주식시장에서 자기 주식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팔 기회가 없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조정훈 위원** 지금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건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1만 원짜리를 2만 원에 사는데 소액주주는 1만 원에 팔 수밖에 없으니까 2만 원에 사는 프리미엄의 기회 제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응모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만 또 소액주주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정말 경청하는 부분이 이 M&A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한국 사회는 M&A가 없는 나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한 80% 이상이 주로, 적대적인 M&A는 더군다나 없고 그냥 합의하에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이 M&A 자체를, 지금 한국이 추구해야 될 정책은 M&A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지금 주주 충실의 의무도 도입돼 있고 특히 자사주 소각이 도입됐기 때문에 방어 장치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M&A를 더 방어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M&A를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측면의 어떤 균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 다 동의합니다, 저도.

○**조정훈 위원** 제가 말이 많아서 마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계속 꼭지를 정리해 봐도 이 정책의 목적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소액주주 보호라고 하셨는데 M&A도 지켜야 되겠고 어느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M&A는 또 막지 않아야 되겠고 또 경영권, 자사주 매각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이 섞여서 과연 이 제도가 도입돼서 이 전체적인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 기업 경영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이 제도 괜히 만들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 추후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예, 계속 더 말씀 주시고요.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 경영권 프리미엄은 존재하지요.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의 재산인가? 그렇지 않지요. 지배주주가 가진 주식 1주의 가치 그리고 일반주주가 가진 주식 1주의 가치가 동일하다 이것이 주주평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원리인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런데 왜 M&A 과정에서 지배주주만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일반주주는 그 프리미엄을 챙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M&A 이후에 여러 가지 PMI가 실패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그냥 휴지가 되는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샘 사례지요. IMM PE가 창업주 일가 27.7%의 지분을 주당 22만 원에 샀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당시 시장 가격은 11만 6000원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주고 샀던 거지요, 프리미엄이 한 10만 원 이상 붙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주는 두 배의 가격을 받고 팔았던 대주주와 달리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었지요. 정말 못 믿겠다 싶어서 팔았던 주주가 있겠지만 그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시장가격 11만 6000원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회사 상황이 썩 좋아지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주가가 4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로서 정당하게 배분받았어야 될, 공유받았어야 될 경영권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하고 PMI도 실패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된 거지요.

이런 상황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제안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38개 OECD 국가들 중에서 29개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 거지요. 그것도 100% 매수 의무를 부여하는 거지요. 그런데 100%를 매수해야지 M&A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팔 권리를 모든 주주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안 팔아요. 저는 당신, 새로운 지배주주 잘 할 것 같으니까 주식 가지고 있어 볼래요’라고 하는 주주들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인수하는 주체가 지분을 100% 인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0% 팔 권리만 보장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아까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M&A 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단정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대적인 M&A가 없다는 거고 일반적인 주식의 어떤……

○박홍배 위원 제가 주식 인수 방식의 M&A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이게 5조다, 지배주주 지분만 인수하면 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됐을 때 5조인데 나머지 70% 일반주주들 지분까지 다 사들여야 돼서 이게 15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5조 1000억이 되거나 5조 2000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독점하고 있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가 나눠 가져야 된다는,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것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EU, 미국, 일본 등등 29개국에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가 없냐, 없습니까? 왜 한국은 거의 안 일어날 거다, M&A가 굉장히 위축될 거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지요? 똑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박홍배 위원** 너무 단정해서 말씀하셨다,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바로……

○**박홍배 위원** 오스텝임플란트 M&A가 있었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대주주가 18.9% 가지고 있었습니다. UCK·MBK가 SPC 설립해 가지고 인수를 진행했는데요. 선행매매로 9.3% 대주주 지분 인수하고 대주주가 9.6%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9.6%뿐만 아니라 일반주주 100%에게 동일한 가격 제시했었던 사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홍배 위원** 그래서 71.8% 공개매수했습니다. 일부 주주가 응했고 일부 주주는 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확보한 지분이 64.45%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100%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던 M&A 사례였고요. 이렇게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없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50% 플러스 1주 왜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절반은 22만 원 받고 절반은 10만 원에 팔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제도의 취지하고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OECD 국가를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경영권 프리미엄은 대주주한테만 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집단소송제와 주주충실의 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 소액주주의 소송에 대비해서 대부분 규율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00%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미국과 또 극단적인 유럽의 제도가 있는데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부분 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고요.

한국의 어떤 지분의 분산 정도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는 50 플러스 1주 정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100%까지 가는 부분은 좀 과하다. 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주한테 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응모를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충분히 안분 비율 해서 사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을 100%로 하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 인수 비용도 늘어나고 이 자체가 M&A 자체를 완전히 또 제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다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여야 위원님들께서 찾아 주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인수 비용 늘어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같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송언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최은석 위원님,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님 하십시오.

○**송언석 위원** 제가 이걸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요건에 최대주주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하는, 8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25% 이상을 선행매수를 할 때는 50% 플러스 1이든지 아니면 전체 100%든지 주식을 다 매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번 제도의 기본 틀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언석 위원** 그러면 50% 플러스 1주까지를 인수하도록 하더라도 이 양반은 무조건 지배주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주주 요건 여부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 제도에 의해서 무조건 제1대주주가 되고 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요건에 최대주주이나 아니냐를 우리가 논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설명드리면 50 플러스 1주라고 하면 100%에 가졌을 때 50 플러스 1주를 가지면 무조건 100% 지배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식 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안분 취득을 하는 그런 측면의 제도가 도입돼 있다. 왜냐하면 나는 50 플러스 1주 이상을 법에서 사라 했는데 의무주식이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줬는데 권리를 행사한 자들한테만 그 권한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언석 위원** 잠깐만요. 25% 이상을 선행매수를 하는데 50% 플러스 1주를 사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한 10%밖에 없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미달되면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것만 사게……

○**송언석 위원** 미달된, 응모한 사람들 것만 사면 된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넘어가면 또 안분해서 비례적으로 사면 됩니다.

○**송언석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25%를 매수했을 때 최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된 사람이 대상인지 아니면 추가로 공모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합쳐서 최대주주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건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제도 자체를 가지고 통상 25% 정도면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지만 지배권 경쟁에 나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기준을 25%로 본 거지 그 25%가 반드시 최대주주가 된다,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배권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렇게 보시면……

○**송언석 위원** 그러면 선행매수할 때 요건에는 그러면 최대주주 요건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없습니다.

○**송언석 위원** 없는 걸로 하는 걸 정부에서는 생각하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최대주주가 돼야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있고 2대주주가 있는데 이 2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되기 싫은데 그냥 자기는 한 25% 정도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25% 가지고 있고 30% 있는 최대주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분을 조금만 늘리면 의무공개매수를 통해서 자기가 원치 않은 최대주주가 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50% 플러스 1, 미니멈을 법에 명시를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거나 또 원래 제1대주주가 지분이 확실하게 과반이 안 된 경우에는 그러면 지배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적대적 M&A의 경우에, 이 규정에 따라서 적대적 M&A를 오히려 더 강제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게 내 의문점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공개매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 이상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면 공개매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제도에서 5% 기준으로 공개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개매수제도를 이용해서 20%나 25% 또는 그 이상을 매수했던 그런 사례도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공개매수제도는 오래 전부터 도입돼 있었고 주로 그것은 지주사 전환할 때, 예를 들면 현재 LG그룹 같은 경우에 공개매수 방식으로 주식의 교환을 했던 그런 케이스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티은행이 한미은행을 할 때도 공개매수 방법을 썼는데 이 공개매수 방식은 자기가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취득하고 싶은 지분만큼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그런 25% 이상 한 사례가 있는가를 물어본 거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저는 있는 걸로 압니다.

○**송언석 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25% 이상을 만약에 매수하려 그러면 의무공개매수로 전체를 또는 50% 플러스 1을 매수해라라고 하는 이 규정을 얘기한다면 공개매수제도를 통해서 25%를 만약에 주식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데 공개매수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송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매수제도로 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은 4%밖에 없지만 내가 25%까지, 21% 상당의 분량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살 수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공개매수제도로 하겠다 그러면 25%만큼을 공개매수로 사면 그만큼은 25가 되잖아요. 그러면 25가 되면 새로이 도입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요건에 따라 가지고 미니멈 50% 플러스 1이나 아니면 전체 주식을 다 매수를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소위원장 박상혁**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요, 아니요.

○**송언석 위원** 난 잘 모르겠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다릅니다. 공개매수제도는 뭐

나 하면 증권시장 밖에서 은밀하게, 왜냐하면 특수관계인들한테 5% 이상을 10인으로부터 장외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주식을 취득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공개매수를 하라고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개매수제도의 한계는 뭐냐 하면 얼마 살지를 주주가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최대주주가 되든 안 되든 지분은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트리거가 되면 경영권을 가지려고 하는, 최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면 ‘너는 50 플러스 1주를 사라’ 이렇게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합병이라고 그러면 양쪽 회사의 어떤 순자산가치를 따져서 현재 주가를 봐 가지고 교환 비율을 1 대 1로 할지 아니면 1 대 0.5로 할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는 게 합병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것은 합병이 아니고 주식의……

○**송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병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 개념하고 달리 내가 주식을 매집을 해 가지고 내가 최대주주가 되어서 지배권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경영권 참여의 일정 부분으로 해서 제2대주주로 하겠다라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25%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의무공개매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개매수제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장외에서라도 사람들에게 주식을 매집해서 25%를 확보하면 그냥 순수하게 프리미엄이든 이런 것 관계 없이 자기가 정한 가격에 일정 부분, 25%까지 매집할 수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25%가 넘으면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는 프리미엄을 얻은 가격을 다 줘야 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지요.

○**송언석 위원** 최소한 50% 가까이는, 지금 제도에 따르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가, 합리적인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개매수제도만 있으면 자기가 그 지분을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그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공개매수 공고를 보면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까지 사고 하는데 응모를 많이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율대로 나눠서 주고 자기는 그냥 한 22% 또는 말씀대로 한 27% 이렇게만 사도 지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작은 자금으로 인수를 할 텐데 의무공개매수를 주면 50 플러스 1주까지 사서 일반주주와 소액주주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하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무 자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회사가치를 주식 수로 나누어 가지고 1주의 가격이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언석 위원** 그러면 그 주식 수만큼 그 주식가격대로 해서 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매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주식가격에 주식 수 곱해

가지고 그 정도만 하면 100% 그 회사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을 내가 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따르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다 줘 가지고 전체 100%를 매수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이 시장가격이 11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어떤 사례에? 그런데 그걸 22만 원이나 이렇게 매입을 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가격으로 나머지 모든 주식을 다 매입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회사 가치의 2배에 상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회사를 인수해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보니까.

○**이강일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조정훈 위원** 아니, 정부 관계자도 이해를 못 하는 법이에요.

○**이강일 위원** 아니,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그런 얘기 아니고 질문이 좀 저기해서……

○**소위원장 박상혁** 잠깐, 잠깐. 짧게.

먼저 권대영 부위원장님 설명 주실 게 있으시고, 이강일 위원님 발언 드릴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현실적으로 아까 한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92%됐고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80% 됐거든요. 그래서 통상 실제 우리가 22년에서 24년간 일어났던 32건의 주식 인수도를 통한 경영권 변동사항의 프리미엄이 통상 한 60~70%가 되고 있는 것이 일단 현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상장회사 주가하고 다른 이유는 이것을 경영권을 가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다른 프리미엄이 통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강일 위원** 지금 이제……

○**소위원장 박상혁**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송언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예 중에 내가 4%를 들고 있는데 공개매수를 통해서 25%를 한다 그게 가능한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막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요, 그 트리거 조건이 25%이기 때문에 25%가 되면 의무공개매수로 넘어가야 되고요. 25% 밑이면 그냥 공개매수제도를 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니까 25% 밑이면 공개매수로 현재처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 가지고 있는데 한 22%가 돼서 26%가 되면 이 제도를 넘어가야 된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5%가 왜 중요하냐면 주총 결의할 때도 정족수가 25%고 대한민국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통상 한 20~3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리거가 되는 지배주주력을 갖는 것을 한 25%로 일단 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예.

이강일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지요. 이것에 한해서만……

○이강일 위원 예, 이것만 할게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한민국이 대단히 높은 이유예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분만 딱 사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던 거라는…… 그러니까 답변이 조금 겹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게 21%밖에 없는데 그것만 가지면 그 회사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21% 살 때 경영권 프리미엄은 당연히 엄청나게 줘야지요. 그런데 50%를 사야 되면 살 때 그렇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많이 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건데 그것에 대한 해설이 없이 얘기가 되니까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소위원장 박상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최은석 위원님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최은석 위원 방금 이 질문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송언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만약에 4%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기존의 공개매수제도에 의해서 25%까지 가는 거는 가능하기는 한데 만약에 25%가 딱 되는 순간 최대주주가 된다고 하면 기존 공개매수가 아니고 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최은석 위원 그것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소위원장 박상혁 제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 거지요, 그러니까?

○최은석 위원 최대주주가 되면 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이걸 따라야지요. 기존의 공개매수제도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최은석 위원 그게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24%까지는 기존 제도로 25가 되면 의무공개의무매수제도가 강제 적용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25가 될 때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조정훈 위원 그런데 25% 아니어도 최대주주 되는 회사도 수도룩할 것 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없나요? 뒤에 계신 여성 직원께서 아주 고개를 강력하게 흔들었다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물론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데는 그럴 수 있지만 통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OECD가 한 25% 정도면 상법상 주총 결의에도 정족수가 4분의 1 이상 주주가 참여해야 됩니다. 통상 그것은 정해진 답은 없지만 한 25% 정도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기준으로 그냥……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통계적으로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상장기업 수백 개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주주 지분이 몇 %에서 몇 %, 25± 그것을 나눈 통계가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으면 한 27% 정도가 상장사, 비상장사, 거래소, 코스닥 합쳐 가지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을 통상 27%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5% 미만이 한 45%가 되고요. 25~50% 사이가 44%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발언을 다 하셨습니까?

신동욱 위원님.

○최은석 위원 아니, 저는 아까 그것 하나만 이야기했던 거고……

○소위원장 박상혁 아, 하나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어서 하십시오.

○최은석 위원 지금 의무공개매수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조금 더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 의무공개매수 대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50% + 1주로 할 거냐 아니면 잔여주식 전부로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법안도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앞의 요건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다음 단계의 대상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게 만약에 잔여주식 전부로 하는 것이 도입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M&A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남아 있는 잔여주식 전부를 이렇게 공개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생기게 되면 M&A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보면 많이 혁신을 이루어 가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자본이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재편해야 될 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게 대주주의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호되어야 되고 하지만 M&A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들이 계속 혁신을 해 가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측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장회사들에 대해서, 특히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6개월, 1년, 2년 전부터 그 산업에 대한 진입 그리고 M&A 여부에 대한 스터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데 이게 도대체 내가 M&A가 가능할 것인가 또는 M&A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면 M&A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침체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량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저도 민간에서 이렇게 기업체 생활을 오래 한 경험으로 또 제가 실제로 M&A 같은 것들을 많이 주도해 본 경험으로는 이 공개매수제도에 대해서 이런 범위가 확장되면 일단 대상 회사로서 감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M&A의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일단 후 순위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M&A 업계의 관행, 관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M&A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장애가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공개매수를 확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현실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여러 여당 의원님들,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 잔여주식 전부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잔여주식 전부가 아니고 50% + 1주로 하더라도 오늘도 이렇게 첨예한 논의들이 많고 이게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된 이후에 몇십 년 만에 다

시 부활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무공개매수 대상의 주식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신중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금융위원장의 생각이나 아니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이것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어떨 때는 50% + 1주가 됐다가 또 이게 갑자기 75% + 1주가 됐다가 아니면 잔여주식 100% 전부가 됐다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게 M&A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시행령에 큰 폭의 재량권을 위임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법률에서 아예 하한선을 정해서 M&A를 추진하는 주체가 본인의 향후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서 50% + 1주만 하면 될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주식을 취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M&A를 추진하는 주체에 좀 더 폭넓은 재량권을 주는 게 맞지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게 정부에 따라서 언제 바뀔지 모른다, 물론 아까 부위원장님은 그때마다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시지만 M&A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 실행하는 기간, 언제 큰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 또 다른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두 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 1주를 최저 한도로 했고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두 분 다 일단 50% + 1주에 강명구 의원안이나 박상혁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한을 두고 대령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법률에 규정을 하셔도 저희는 일단 상관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한 번 발언하시지요, 김형연 위원님 발언하시고.

○**김형연 위원** 저는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과 대체로 취지가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방식대로라면 대략 경영권 25% 정도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장가치 플러스 경영권 프리미엄만 가지고도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 + 1주를 취득한다고 했을 때에는 50%에 해당되는 시장가치, 주식의 시장가치에다가 플러스 경영권 프리미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경영권 인수대금이 25%의 주식의 시장가치 정도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금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이강일 위원**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김형연 위원** 이강일 위원님……

○**소위원장 박상혁** 계속 더 하세요.

○**이강일 위원** 먼저 하세요. 발언 기회를 받는 거예요, 지금.

○**김형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이해를 못 했으면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그게 아니라 발언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김형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법안,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본적으로 시장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새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반대하는 일반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전 경영권자들만 프리미엄을 얻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서 불공평하니 그리고 의무공개매수제도라는 것

을 만들어서 그런 불합리를 해소하자는 입법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거래의 제한과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적절히 조화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금방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50% + 1주 정도면 적정선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것을 어느 정도를 의무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는 국민의 기본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저도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쉽게 위임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행정의 탄력성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50% + 1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제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논의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김현정 위원** 설명하고 신동욱 위원님 얘기하시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나중에 하시겠어요?

○**이강일 위원** 논의하는 데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직접 발언하는 게 아니라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해가 좀 되어야 논의가 될 것 같아요.

합병할 때 50% + 1주가 여기 설명하는 분들이 다 말씀하실 때 그게 무조건 50% + 1주를 사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합병을 하고 있는 주체가 원래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뭐냐하면 합병이 시장에 기대했을 때 잘됐어요.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상황이 되잖아요. 50% + 1주 공개매수를 요청해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합병을 했잖아요, 이것 잘못된 합병이에요. 그러면 나는 ‘니네 다 사줘’ 하는데도 다 안 사도 돼요. 50% + 1주까지만 사면 되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일 위원** 예?

○**조정훈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시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강일 위원**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합병이 잘 돼서 이런 합병이 좋은 방향으로 갔다, 앞으로 주식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했을 때 50% + 1주를 공개매수 신청을 해도 다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작년이고 재작년……

○**소위원장 박상혁** 들고 있는 게 더 상승할 거니까……

○**이강일 위원** 상승할 가치가 높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병이 좀 잘못됐고 가치도 잘못됐다 했을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다 안 사도 됩니다. 50% + 1주까지만 사면 해태가 되기 때문에 안 사도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시장이 안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딱 막아놓은 경우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하고 아까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없이 논의가 됐

으면 좋겠다, 무조건 50% + 1주를 사야 되면 어마어마하지요.

○**신동욱 위원** 그것을 사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면 곤란하고요.

○**소위원장 박상혁** 신동욱 위원님 잠깐 말씀하세요.

○**신동욱 위원** 그거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는 것이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주관에 너무 치우치면,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큰일나겠다 싶어서 이 법이 올라온다 그래서 M&A를 직접 많이 하시는 M&A 업계 분들 그리고 주식자본시장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아시는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어제 여러 분하고 사실은 통화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걱정의 요가 뭐냐하면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정부가 뭐 하겠다고 그러면 또는 여당이 하겠다고 그러면 뭐 어찌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100% 하면 큰일납니다—이것 그냥 제가 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러면 협상의 영역에서 저희가 보면 50% + 1로 해서 합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현실 시장에서 어떤 양태가 나타나냐면 매매 가격을 결정할 때 하루 가격이 아니고 몇 달 동안 평균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M&A라는 것이 시장에 소문이 나면 이럴테면 100% 전량매수 같은 이런 제도가 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무조건 2배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 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M&A가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버리기 때문에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쪽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예상보다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 버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M&A가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아까 아마 저희 당 위원들이 걱정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프리미엄이고 뭐고를 따지기도 전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서 불가능해진다는 걱정을 하나 하시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잔여주식을 전량 매입해서 소위 사모펀드들이 회사 경영권 전체를 통째로 사 가지고 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회사들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위원장님, 두 분 말씀 계속하시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회사의 소위 밸류에이션이 시장 주식의 총액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MBK나 이런 사모펀드회사들이, 본인들이 그걸 100% 다 감수하더라도, 이럴테면 우리 시장 주가총액이 3조다. 그런데 우리는 한 10조 정도 주고 사도 저걸 사 가지고 우리가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냐 하면 상장폐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까지 100% 매수해 간 기업들은 다 예외 없이 상장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챙겨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분들은 내가 10조에 사도 이걸 상장폐지해서 구조조정해 가지고 팔 것 팔고……

사실은 홈플러스도 그 비슷한 경우가 됐는데 자산 매각하고 구조조정해서 더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 잔여주식 다 사는 제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에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본시장이라는 데가 정말 정글 같은 곳이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50%+1이라는 것도 협상의 영역에서, 여야가 협상의 영역에서 이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 또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50%만 하면 그 회사도 온전히 보전이 되고 주주들도 팔고 싶은 사람 팔고 또 안 팔고 싶은 사람은 안 팔고 해서 스스로 아주 좋은,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사 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나쁜 사람들인지,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 줄 사람들인지 내릴 사람들인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100주 가진 주주든 1000주 가진 주주든 그 주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1안도 언뜻 보기에는 그냥 협상안으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당국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래는 금융행위 아닌 것 맞지요? 그렇지요? 이게 금융행위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세밀하게, 자본시장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 일단 그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량 매수가 옳은지 50%+1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사실상 어렵다, M&A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도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박상혁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시고, 짧게 하시고……

○김재섭 위원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고 우리가 전제로 깔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50+1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M&A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든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연구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강명구 의원 법안 발의할 때 연구용역을 했고요.

사실 오늘 법안심사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상법 내지 회사법 M&A 전문가들한테 의견 조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대부분 50+1주 쪽에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모아졌다는 게 실제로 그러면 M&A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100%는 M&A 시장의 인수대금을 늘려 가지고 M&A 자체가 저해되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쪽의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50+1주든 100% 전체든, 그게 20%든 30%든 말하자면 가장 좋은 딱 균형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1주를 하는 게 좋은지 아

니면 100%를 다 매수 처분하는 게 좋은지 그 나름의 균형점으로 했을 때 그냥 전문가들이 ‘대충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과 실제로 이 정도, 다른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보니 유럽은 몇 % 정도에서 가장 M&A 시장도 활성화되고 동시에 소액주주도 보호된다는, 말하자면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쟁구 대충 굴러 가지고 50+1주라고 하는 건 저는 약간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 또 걱정되는 건 MBK 사태 때문에 우리가 PEF 차입 규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매수금액 자체의 여력이 지금,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이 지금 다른 나라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을 텐데 다른 해외의 PEF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해외의 사모펀드들이 적대적으로 공격했을 때의 방어수단 같은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입 규제라는 하나의 변수를 빼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두 가지 점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이 제도를 한 10개월 정도밖에 운용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사례를 가지고 이 타당성이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경제학자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외 사례를 분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상반된 분석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자체가, 의무공개매수 도입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오히려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아까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들이 꽤 많은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부분이 M&A 활성화를 저해한다 하는 유럽 쪽의 반성의 논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PEF의 역차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잘 모르겠지만 PEF도 그동안 사실은 일반주주 입장에서 보면 아까 남양유업이나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주주가 소외되고 경영권 인수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오히려 도입해서 PEF도 우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하에서 자본시장법의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고.

마찬가지로 그 PEF도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차별인지……

○김재섭 위원 일단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차입 한도를 다 낮춘 것 아닙니까, 최근에 MBK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직 그 법이 지금……

○김재섭 위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자기자본의 400%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이제 200%로 낮춰지는 것 아닙니까, 곧?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200%로 하되 400%까지 가면 보호를 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낮출 생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는 200%로 간다고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자본력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회사랑 규모의 차이가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식의 의무공개매수 청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지배주주가 되어야 될 텐데 자본력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입 규제까지 생겨 버리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 부분은 PEF 업계나 이런 쪽, 특히 M&A를 하는 쪽에서는 일견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논거라고 보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균형점을 찾자, 일반주주도 보호하면서 M&A를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그 균형점을 찾자 해서 나온 게, 여야 의원님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잠깐 한 5분만 정회했다가, 그다음에 이미 앞부분의 요건과 대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나눴으니깐 그 후에……

○**김현정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상혁** 짧게?

예, 먼저 하시고 짧게만 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야당 위원님들께서 되게 비판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가지고 50+1 이것도 과하다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전액 다 100%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EU나 일본이나 다 100% 의무공개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40%를 갖고 있는 주주가 의무공개매수를 신청하게 되면 10%만 더 매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일반주주들은 안분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선진국, 대부분의 선진국이 100% 의무공개매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이게 M&A 시장을 위축시킨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한편만 보는 겁니다. M&A의 비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균 육칠십% 이상 더 주고 산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있는데 그것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이 주고 사는 거거든요. 만약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 인수 비용이 상당히 줄 겁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그런데 지금 우리 상법의 대원칙은 주주평등이지 않습니까? 왜 지배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일반주주들한테는 그걸 다 누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M&A 방식의 인수합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수합병할 때 주가로 합병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게 하고 한쪽은 올리고 해서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 물적분할·중복상장 등으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투자하지 않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런 게 우리의 만연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저희가 상법도 다 개정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M&A 방식이랑 사실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서는 왜 차등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지금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지배주주 입장에서요, 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전액으로 하는 게 더 도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필요한 거니까 그걸 이 제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부위원장님, 그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관점들도 있는데 저는 너무나…… 이것이 갑자기 ‘50+1은 아니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의 논의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리면서, 잠깐 쉬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서일준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정말 다양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당도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건, 그건 저희 다 공감을 합니다. 전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고요.

다만 지난 2025년 2월 소위 때 논의한 결과를 보니까 강훈식 위원은 100% 다 매입해야 된다, 그다음 유동수 위원님은 의무공개매수제 자체가 M&A 시장을 위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 제도가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100% 하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M&A 시장도 위축하지 않고 소액주주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접점이 어디냐, 거기에 이론적 논거가 있느냐, 주요 사례가 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어떤 정답이 없는 그런 영역으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논문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치만 놓고 보면 일반주주도 보호해야 되고 M&A라는 가치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제도 운용을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정회하기 전에 하나, 아까 권대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나라 M&A의 현주소를 말씀하신 취지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나라에 비해서 이런 방식의 M&A가 활성화된 나라는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저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의무공개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나라가 아니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논문…… 독점, 아까 말한 것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이 비싼 가격으로 존재했을 때 그것을 비싸게 사서 하는 것보다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싸게 되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상반된 논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전량 매수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또는 미국도 제도는 없지만 사실상 다 전량 매수해서 가장 M&A가 많이 일어나는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한 숫자를 우리가 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 외국 사례의 참고 이런 부분들과 이미 제도를 논의하게 된 우리의 배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K-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문제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너무나 억눌려져 있고 그런 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많은 개미들의 분노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걸 논의하고, 우리가 M&A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 도입에 취지가 있다. 그러나 주가 그거고 거기에 균형점을 찾게 M&A 활성화도 우리가 저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걸 함께 고려해야 될 요소인 거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 논의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도 주장을 드리면서요.

5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음에 매수 절차와 조건·방법 등, 물론 앞의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념들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아직 다 숙지가 안 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뒷부분도 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어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의사진행발언.

○**이강일 위원** 지금 논의를 할 때 뒤의 거가 숙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앞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자꾸 발언을 자를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한 다음에 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되면 시장가격 막 올라가서 무한정, 이것은 그게 아니구요. 합병가격이 결정돼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원하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팔 사람 있을 때 50+1까지만 매집하면 되는 거고 응모하지 않은 사람 건 안 사도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절차·조건·방법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강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뒤에 설명이 있는데 그것 없이 앞엿것만 떼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논의가 돼서 제가 오해가 계속 쌓여요, 이렇게 되면.

○**소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이것 뒤까지 논의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내용을 가겠습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님, 21페이지지요? 2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20쪽입니다.

자료 20쪽 2번부터인데요. 이 부분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전제로 부수적인 요건이라 앞쪽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논의사항을 반영해서 만약에 도입한다면 최대주주 요건을 포함하고 50%+1 정도로 감안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제로.

○소위원장 박상혁 지금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체와 50+1이?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상혁 도입을 전제로 하되, 물론 전체 그림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래서 만약에 도입한다면 절차는 이렇게 된다는 것 한번 살펴보시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먼저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 공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의무공개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라 하겠고요.

다만 입법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말씀드리면, 왼쪽 보시면 강명구·천준호 의원안은 의무공개매수를 공개매수와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상 공개매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강일·박홍배·박상혁 의원안은 의무공개매수를 공개매수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개매수 규정이 직접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 방식이 입법 경제성 및 체계 적합성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무공개매수 공고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의무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 공개매수 규정에 이미 공개매수 철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24쪽, 선행매수일로부터 의무공개매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공개매수의 경우에도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우회매수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이 선행매수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무공개매수자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 등을 매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일정 가격 이상으로 매수하도록 명시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 도모를 위한 취지로 보이고 개정안들은 모두 선행매수가 가격, 최근 1년 매수 최고가액 등 구체적 기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과거매수가격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경우 선행매수가격에 비해 일반주주에게 더 유리한 가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개정안들은 의무공개매수 예정 주식 수와 응모 주식 수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응모 주식 총수가 예정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 예정 주식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도록 할지 또는 매도 청약 전부를 매수하도록 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고, 추가적으로 공개매수 조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 마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공개매수 결과보고서, 공개매수 신고서 등의 공시규정은 공개매수 준용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의무공개매수 미이행 또는 절차 위반행위 시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주식 처분 명령권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겠으나 의결권 제한 및 처분 명령 대상에 박상혁 의원안대로 선행매수분 전체를 포함할지—즉 25% 미만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또는 제재조치의 비례성 등을 고려해서 추가로 구입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자료제출 명령·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행위 시 정정명령 및 의무공개매수 정지 또는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겠으나 현행 공개매수 관련 규정에 동일한 규정이 있어 별도 규정을 둘 실익은 크지 않겠습니다.

쪽 넘어가서 제재수단 근거는 46쪽입니다.

46쪽에 제재수단 근거 마련 조항이 있는데 의무공개매수 관련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의무공개매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만 개정안의 양형 수준이 현행법상 공개매수 관련 양형 수준과 달리 규정된 경우, 즉 의무공개매수 미이행에 대한 제재처분 수준을 현행법상 공개매수보다 무겁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겠고, 현행법상 공개매수 대상자가 제한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처벌 근거가 없는 반면에 개정안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대상자의 제한된 의결권 행사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안이 있어 이를 신설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의무공개매수의 미이행, 공개매수 공고기간 도과한 공고 시 의무공개매수 예정총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2쪽입니다.

기타 보완사항으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감독원 업무 범위에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인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금융감독원 업무 범위에 관해서는 이미 조항이 현행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규정입니다.

54쪽 보시면 시행일과 적용례가 있는데 시행일은 각 안들이 공포 후 1년, 6개월, 공포한 날로 갈리는 바 하위법령의 개정 등을 위해서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적용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0쪽 의무공개매수 제도 절차·조건·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23쪽에 대해서도 공개매수 철회 관련 조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4쪽 의무공개매수의 우회 방법에 대한 규율에 대해서도 우회 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박상혁 의원안, 천준호 의원안, 강명구 의원안을 수정 반영하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쪽, 가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또는 EU 제도와 동일하게 과거 1년간 해당 주식의 매수 최고가격과 신고서 제출 전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김현정 의원님께서 자산가치를 고려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의 자산가치를 고려하게 되면 저PBR 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런 의무공개매수 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가가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대해서도 의무 주식 수와 다른 경우에는 비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기타 공시규정 준용에 대해서 삭제 필요성도 저희도 같은 제도 안에 조문체계를 정비하면 큰 이견 없이 전문위원 조문체계 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29쪽, 처분명령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대부분 선행매수분 25%까지와 초과매수분,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선행매수분 25%까지는 합법적으로 일단 취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M&A 차원에서. 그런데 처분명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기 때문에 초과분,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는 것이 어떤지 정부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저희가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이중 처벌의 문제와 비례의 원칙을 감안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만 처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적인 의무공개매수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 자체는 일단 제한을 하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또 한편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이 없으면, 막대한 물량을 일시에 처분명령을 내려 버리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제가 보기에 비례의 원칙이나 이중 처벌의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초과분에 대해서만 처분명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으로 가겠습니다.

46쪽, 제재수단 근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 내용을 조율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개매수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부분과 박상혁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대부분, 천준호·박상혁·강명구 의원님 안 또는 김현정 의원·이강일 의원·박홍배 의원님 안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율된 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규정 48페이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매수 제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는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기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절차 보완 조문 의무로 정부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부칙의 경과 규정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하위규정 마련에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고 적용례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얘기하실…… 조금 부수적인 것은 놔두시고 핵심적인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제재수단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몇 가지, 그러니까 제재수단·가격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위반 시 어떻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처분명령……

○소위원장 박상혁 처분과 관련된 부분들, 의결권 제한 이 부분들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부위원장님, 25페이지에…… 방금 저도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여쭙어보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보면 과거 1년간 해당 주식의 매수 최고가격과 신고서 제출 전일 시가 중 높은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위는 이런 안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 하신 것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여기 과거 1년, 이게 해당 주식의 매수 최고가격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선행 매수가격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뭘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선행……

○최은석 위원 선행 매수금액은 어찌 보면 내가 이 회사의 1대 최대 주주가 되어서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주식을 매수한 그것을 우리가 선행매수라고 한다고 보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1년간 해당 주식의 매수 최고가격은 본인이 산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선행 그 가격 말고 그 이전에 좀 더 샀던 게 있으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말씀드리면 선행 가격이라는 것은 트리거되는, 25%가 되는 그 가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서 비밀리에 소액 지분들을 매집해 왔을 수가 있으니까 1년간 가정을 안 두면 마지막 선행 가격이 트리거되는 가격을 굉장히 낮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1년간이라는 이런 기간 개념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석 위원 선행 매수가격 그 이전에 새롭게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가 그 주식을 인수한 금액들 다 그것을 합쳐 가지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안 하면 쪼개기를 한다든지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기간 개념을 넣었습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석 위원 이것 혹시 다른 국가들의 사례나 이런 것들 어떻……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다른 국가들 사례도 대부분 시장가격과, 그러니까 시장가격이라 하면 신고서 제출 전일 종가, 그게 시장가격이지요. 시장가격과 기존에 내가 매수

했던 가격을 보는데 기간을 통상 12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최은석 위원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 하는 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통상 12개월 하는 나라가 많고 일부는 6개월 하는 나라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구 증권거래법은 그때 12개월……

○최은석 위원 혹시 파악된 나라, 방금 6개월이 몇 개국이고 12개월이 몇 개고 이것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영국·프랑스가 12개월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태리·싱가포르가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실은 1년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보면 방금 글로벌 스탠더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사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잘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제가 아까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데 금융위 의견은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분명령 내리되 의결권에 대해서는 25% 이하 전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다 제한하는 것……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선행매수도……

○최은석 위원 다 포함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의결권을 제한하니까 처분명령은 좀 제한적으로 하는 거가 비례의 원칙에 맞을 것 같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에 12개월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이미 90년대에 있었던 법령이라 이게 지금도 12개월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바뀐 시장 상황을 놓고 실제로 그렇게 과거에 막 매집했던 이런 사례가 없으면, 혹시 이게 1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내가 특별히 이 회사에 대해서 인수 의도를 가지고 매집했던 게 아니고 우연하게 내가 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춰서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생겨 가지고 별도로 조금 더 대주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이런 것을 감안하면 1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한번 금융위에서 조금 더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지금 법안 자체가 선행 매수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대부분 위임을 해 주셨고요. 법에서 1년이라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강일 의원님이 최근 1년을 주고 계시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 증권거래법에 대한 12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아마 그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적 현실, 최근에 우리가 법을 통과했습니다만 주가 누르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리 눌러 놓은 다음에 할 수 있었던 몇 번의 한국 사회에서의 이런 부분들의 반성적 고려가 함께 판단의 요소로 작용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합병할 때도 합병비율 공정시장가액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

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박상혁** 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어쨌든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분야고 또 금융위의 실제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영에 위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김형연 위원님.

○**김형연 위원** 의무공개매수 절차 위반행위 시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먼저 의결권 행사 제한이 있고 이 의결권을 어디까지 제한을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처분명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절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이런지요. 그러니까 이로 인한 제재가 제가 보니까 삼중·사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의무공개매수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 제한된,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의결권을 행사하면 형사처벌하고. 여기 형사처벌 규정 있네요, 제한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김형연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삼중·사중의 제한을 하게 되면 아까 비례성 원칙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비례성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침해되는 이익과 그로 인해서 보호되는 공익 목적 등 이런 것들이 균형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최소 침해로도 가능하다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강한 침해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의결권을 제한하고 제한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충분해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삼중·사중으로 마련하는 건가요?

○**송언석 위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소위원장 박상혁** 이쪽 라인에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조정훈 위원** 합리적인……

(웃음소리)

김형연 위원님, 환영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란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실은 정부가 검토를 했다가 마지막 법안소위 하는 그 단계 즈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례의 원칙이나 이중 처벌 문제, 보완장치가 충분히 있겠다는 그런 정부 내의 일단 전문가들의 논의가 꽤 많았고요. 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건을 확실히 제안하면 10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막대한 25% 내지 30%의 물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주주들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 들여 가지고 사실 법안소위장에서 이렇게 정부가 수정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그렇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부위원장님, 지금 29페이지하고 46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정부에서는 29페이지에서 보면……

○송언석 위원 내가 그 질문을 하려 그랬는데……

○소위원장 박상혁 그렇게 보시려고 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25% 미만까지는 합법적으로 취득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걸 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거까지를 처분하기보다는 그 자체는 이 제도가 지배권에 변동이 있으니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이 규제의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법 상태가 있으면 바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이고 형사처벌도 여러 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처분권 조항이 없어도 규제의 실익을 달성할 수 있다……

○소위원장 박상혁 거기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25%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법적·취득적 성격이 좀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랬을 때의 형사처벌은 46페이지에 여러 위원들이 있는데, 여러 안들이 있는데 위에 붉은 글씨, 마이행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주식의 매수는 어떤 것들을 검토의견으로 내신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의무공개매수를 한다고 해서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렸을 텐데 그걸 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위장된 M&A나 M&A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나는 이거 공개매수를 해서 이렇게 회사를 갖겠다’ 해 놓고는 하지 않고 주가 올리고 주식 팔고 나가는 그런 어떤 불법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거고요. 의무공개매수를 한다 해 놓고 뒤로 이면계약을 통해서 저가로 지분을 사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고가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현재 공개매수에 있는 그 조문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공개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이상 지분을 살 때 공개적으로 사라 하는 제도로 의무공개매수는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 벌칙을 높이는 박상혁 의원안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소위원장 박상혁 강명구 의원하고 천준호 의원하고 같으니까 그거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다 이렇게 지금 합의 조율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입법체계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수정했던 그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명구 의원안을 지지하시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한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

이 이 의결권 행사 자체로만 처분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보기에는 추후 소송 등을 통해서 의결권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해 본들 그게 무효화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지 않는 것……

○소위원장 박상혁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안처럼 형사처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나머지 절차상의 공고 미이행부터 주식신고서를 교부하지 않은 주식 이거는 다 처벌 조항을 두고요, 제 안처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다음에 아까 또 앞에 29페이지하고 함께 연결되는 게 처분명령이 있으니까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 위반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형사처벌을 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1년 이하. 이게 실효성을 위해서, 현행 공개매수와 같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렇게 이해하면……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 지금 박상혁 위원장님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처분명령을 하든지 의결권을 제한하든지 하나의 행정처분을 지금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뒤에 46페이지의 경우에는 형사벌을,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본시장 관련 법제에서 대개 이렇게 행정벌과 형사벌이 병과되는 이런 규정들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 지금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서 미이행이든 절차위반이든 이런 등등의 경우에 행정처분으로 이걸 팔아라 처분명령 하는 거하고 의결권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 게 현행 제도의 공개매수, 5% 이상의 공개매수 하는 거기에도 똑같이 그런 규정이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송언석 위원 아니, 46페이지에 있는 거는 형사벌이고, 공개매수의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을 때리는 형사벌이 있다는 거고 5% 이상을 공개매수를 해야 되는데 공개매수 하는데 공고를 제대로 안 했든지 공고해 놓고 다른 방법으로 매수를 했든지 이런 식의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의무공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 죄송합니다. 공개매수……

○송언석 위원 기존의 공개매수 제도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5% 초과하는 부분을 미흡하게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이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똑같은 내용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언석 위원 수석전문위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위원님, 저희 자료 29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행법 145조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비슷하게 받아서 2항·3항으로 구성……

○송언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명할 수 있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도입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에도 이 규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나요, 29페이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맞춰서 39쪽을 보시면 박상혁 의원안이 지금 현재 145조 본문을 1항으로 하고 2항·3항으로 해서 의무공개 제도에 대한 내용을 비슷하게 유사한 형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오케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에서는 지금 처분명령은 25%를 초과하는, 선행매수 해서 25%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하거나 또 의결권 제한은 선행매수를 포함해서 전부를 하거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송언석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개매수 제도에서 여기는 어디까지를 할 거냐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이 조문에서는 안 보이는데……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공개매수 제도 자체는 공개매수에서 어거서, 공개매수를 위반해서 취득한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 개정안은 선행매수 플러스 추가매수 한 부분까지 다 의결권 제한하고 처분명령으로 처분……

○송언석 위원 현재 공개매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현재 공개매수는 공개매수 한 부분……

○송언석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의결권 제한을 하든지 전체를 다 처분을 하라 이렇게 현행에 나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5%까지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5%를 초과한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그것 전체를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조금 다른……

○송언석 위원 그러면 현행 공개매수 제도는 5%를 초과하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해서 매수한……

○송언석 위원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전체의 의결권과……

○송언석 위원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한하고 그걸 또 처분할 수 있는……

○송언석 위원 또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이 도입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25%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처분명령을…… 다만 의결권은 25% 선행매매 자체 전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정부 의견은.

○송언석 위원 아, 선행매수…… 의결권 제한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좋겠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언석 위원 그러면 49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 의문은 행정벌하고 형사벌의 이중처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지금 공개매수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같은 라인에서 동일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처벌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현행 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막대한 자금이 들고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저희가 이런 거를 제한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제 경험상 있습니다. 그런 내용……

○송언석 위원 공개매수 제도의 절차라든지 공고라든지 등등을 위반해서 추가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형사벌을 받거나 아니면 행정벌로 처분명령이나 의결권 제한을 하거나 이랬던 사례가 많지는 않다? 있기는 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 국장은 기억이 없다 하고 저도……

○송언석 위원 기억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돈이 몇 조씩 가기 때문에 절차 위반을 하지 않은데 혹시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감히 법을 위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억제력 효과가 있단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이게 과하니 아니니 이런 걸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어 보여서 일단 이 자체로, 형사벌과 행정벌이 병과되는 이 자체로만 해도 다른 행동을 못 하게 만들 수 있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억제력이 있다고……

○송언석 위원 억제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조금 논의하다가 말았던 것 중에 24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선행매수일로부터 의무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25%까지를 현행 제도에 따른 공개매수로 25%까지 매입을 했을 때 그때도 새로이 도입하는 의무공개매수 이 제도에 해당이 되고 50%플러스 1주까지 사도록 한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공개매수 제도를 통해서 25%까지 만약에 매입을 하면 의무공개매수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선행매수일은 그러면 언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선행매수일은 25%를 딱 넘어가는 그 트리거 되는 그 한시점이 선행매수……

○송언석 위원 25%가 되는 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언석 위원 그날부터 그러면 선행매수일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개매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쏙 받았는데 26%, 29%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25%에 상당하는 날짜에 그러면 선행매수일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의무공개매수 기간으로 해 가지고 50%까지는 매

수를 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래서 이거 의무공개매수는 하려고 하는 자가 공고를 하고 물량을 사는 거기 때문에 공개매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헛갈려서 그래. 현행 제도의 공개매수로 해서 25%,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현행 공개매수 제도로 30%까지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데 아까 제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송언석 위원** 최대주주가 아니고, 최대주주는 31%를 가지고 있다 쳐 봐요. 현재 31%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최대주주가 될 마음이 없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29%까지만 공개매수 제도를 현행 제도를 이용해서 공개매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거는 다른 OECD 국가나 대부분의 나라도 최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배제시켜 놔기 때문에 그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공개매수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가지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최대주주가 50%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거보다 좀 적은 한 30%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기존의 공개매수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새로운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주식을 매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29%라든지 28%까지 공개매수 제도를 이용해서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의무공개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의무공개매수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최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본들 경영권을 못 갖고 거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아니……

○**이강일 위원** 설명을 너무 길게 안 해도 알아듣게만 딱 답변하시면 되겠는데……

○**송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직 스터디가 덜 돼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예를 한번 들어 보면,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현행 최대주주가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존의 공개매수 제도를 통해서 29%를 매입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제도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9%까지 공개매수를 해. 그런데 지금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최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단계에서 29%를 확보하고 난 뒤에 옆에 또 우호적인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그러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때는 공개매수……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는 이면의 사람이 만약에 공동보유자면 저희가 이번에 이 제도를 할 때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법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나누기로 한 사람은 저희가 이 법에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로 29%

가지고 자기 친구, 2% 가진 친구를 몰래 숨겨 났으면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들어와서 이 친구는 의무공개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로 되고 형사처벌 조항이 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것이 다 클리어가 될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클리어됩니다. 왜 그러냐면……

○송언석 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5페이지를 보시면 최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요 내용에 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들이 매수 등을 하는데 특별관계자가 누구냐? 특수관계인으로서 배우자, 혈족, 육촌, 사촌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 놓으면 둘이서 이면계약을 맺는 친인척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보면 공동보유자로 해서 여기 보면 주식 등을 상호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또는 의결권을 공동 행위 하는 자를 저희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법은 통상 소유라는 개념을 넘어서 보유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규율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공동보유가 그렇게 드러나 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메이크 센스 할 수도 있지만 공동보유라고 하는 걸 사전에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하고 저하고 예약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다가, 손명수 위원님 미안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건 어차피 어떤 경우든지 똑같은데 법이 규율하고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부분은 증권법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또 하나는 26페이지 보니까 아까 의무공개매수 신고를 하는데 예정 주식보다 많이 들어올 때는 비례배분해서 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50%+1까지 매수하도록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덜 들어왔을 때, 미달했을 경우에, 미달했을 때는 공모한 주식만 매입하면 끝난다라고 아까 정부에서 설명하던데 그 내용은 이 조문 어디에 담겨 있나요? 이 법 지금 새로 도입하는 이 법의 조문 어디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36쪽.

○송언석 위원 36쪽에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박상혁 예를 들어서 10%만 응모했을 경우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응모 주식 그것만 다 사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 조문이 어디인지 여쭙보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여기 보면, 36쪽하고 37쪽에 보시면 141조(공개 매수의 조건과 방법) 이 조문이 옆에 박상혁 의원안으로 가면 ‘현행과 같음’ 이렇게 돼 있으니 그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고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의무공개매수의 경우는 같은 항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142조 1항을 보시면 1항은 비례해서 사고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1항을 보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나도

안 사도 된다 하는데……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37쪽에 나와 있는 141조 1항의 1호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미달하면 안 사도 된다는 거지요.

○**송언석 위원** 미달할 경우에는 전부를 매수하지 않는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조는 비례해서 사라는데 이 조문에서 하나 빼야 될 것이 미달하더라도 요청한 주식은 다 사라 하는 조문이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1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미달하는 경우에 안 살 수 있다는 조문은 저희가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사야 된다, 비례해서 사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매수는 미달하면 안 사도 되거든요. 조건부 공개매수가 가능한데 의무공개매수는 그게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박상혁 의원안에 따르면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송언석 위원**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글썄, 여기 법률가 출신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141조의 1항 단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에서 미달할 때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이것을 아예 적용을 안 한다고 한다면 아예 하나도 안 사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응모한 주식은 사야 되는 겁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가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조문 정리할 때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정부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자신은 없어.

○**소위원장 박상혁**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조문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시니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다음에 내가 너무 오래 마이크를 쥐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빨리 해야 되겠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앞서 46페이지 형사벌에 있어 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특수관계인 전부가 다 형사벌 처벌 대상인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그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법인의 경우에는 징역형은 할 수 없으니까 벌금형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데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일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법체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조문이 명확하게 양벌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 아까 얘기했던 공동보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 그걸 다 합쳐서 특별관계인이라고 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무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벌금형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법인의 경우에 법

인의 대표자나 임원하고 법인하고 공동으로 벌을 받는다는 양벌규정이 여기 규정에 들어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일단 실무자는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좀 찾아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 증권법 체계가 대부분 양벌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돼서 아까 논의사항 중심으로 보는데 8페이지에 의무 공개매수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금융위의 입장은 지분 기준만 하자는 거지요, 25%의 최대주주? 그리고 매입 방식은 장내거래, 장외거래 이런 것 상관없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니 어떤 주주가 25%가 되는 순간 그리고 최대주주가 되는 순간 이들 중의 하나만 충족되고 하나가 안 충족되면 적용이 아니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25%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앤드(and) 조건입니다.

○조정훈 위원 앤드 조건으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강한 우회 인센티브가 생길 거라고 하는데…… 알겠고요. 제가 오늘은 결론을 내자 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의 입장을 야당 위원으로서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무공개매수 절차 조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자인 걸 인지하고 25%가 된 다음 얼마 만에 해야 됩니까? 15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15일 이내에, 자기가 25%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공고를 하고 그 업무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맞아요, 그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변제호 공고를 하고 공개매수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의무매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공고는 선행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기가 25%가 넘어가면……

○조정훈 위원 만약에 그 15일 이내에 최대주주 조건이 달라졌든지 25 이하로 내려가면 취소되고?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변제호 예, 그런 철회 조건도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취소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변제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바로 그때 작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데 원칙적으로 철회가 원칙 금지고 예외적으로……

○**조정훈 위원** 철회는 못 해요?

부위원장 옆에 계신 분 어떤 직책……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변제호**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는 저희가 의무공개매수 해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요. 아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공개매수의 일반적인 절차를 똑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사항들, 루프홀(loophole) 같은 것들은 이미 공개매수 조항에 의해서 금지가 돼 있을 테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의무공개매수의 자격 조건이 되는 걸 인지하고 법적으로 25%가 되면 15일 안에 의무공개매수 공고를 안 하면 처벌조항에 상응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변제호**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공고를 했는데 공고 이후에 25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조건이 아닌 경우가 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2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공개매수의 철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보면 공고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의무공개매수를 철회 못 하게 했습니다, 장난칠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조정훈 위원** 그런데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억울하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억울한 것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좀……

○**조정훈 위원** 아니, 25%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대주주가 되는 게 싫다라고 생각한 다른 사람들이, 그 75%가 시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론적으로 26%를 갖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최대주주 아닌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그건 억울하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것은 그다음 조문에 보면 대항매수라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대항매수를 하는 경우에, 자기보다 더 지분을 높여 버리는 겁니다. 25보다 높여서 26%가 되면 내가 최대주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훈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대항매수 조건인데요 그 조건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25%와 최대주주 조건이 변경이 돼도 의무는 이행해야 된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대항매수가 있는 경우는……

○**조정훈 위원** 저는 선의와 악의가 다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싶지 않아서……

25페이지에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건데 금융위의 입장이 됩니까? 여러 안들이 있는데 대령으로 정하자, 아니면 물이 있습니까, 금융위가 가장 선호하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는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과거 1년간 해당 주식의 최고매수가격과 신고일 전일, 제출 전일 가격 중 높은 가격, 다시 말씀드리면 선행매수했던 가격과 그다음에 시장가격 중에 높은 가격으로 일단 저희는 정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

습니다.

다만 최은석 위원님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걸 정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이 맞는지, 6개월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입법례가 나누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 법 취지에 맞도록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해했습니다.

건건마다 좀 궁금하고 입장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일 수도 있고 제재일 수도 있고 제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를 항상 우회 또는 악용할 수 있는 시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상승, 작업하려고 단타 매수하는 상황이 된다면 특정 기업이 또는 개인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주식을 마구 사고 있다라는 뉴스가—이 법이 통과됐다는 전제로요—시장에서 소위 지라시로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매우 올라갈 겁니다. 아까 부위원장님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지요.

다만 이 사람이 의무공개 매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실제로 25%가 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매매할 의지가 있다는 소리를 막 퍼뜨리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한 2~3% 사는 행위를 하면서 저 투자자가, 저 기업이 진짜 이 회사를 사겠구나라는 인상을 주면 주식시장은 그 즉시 반영이 되거든요. 주식이 마구마구 올라가는데 ‘미안해, 나 계획 바꿨어’라고 발을 빼도 25%와 최대주주 요건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지요? 물려서도 안 되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조문에 따른 책임은 없으나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행위나 시장교란행위나 이런 기타 규율체제로 저희는 제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게 선의로 또는 전략상의 변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말을 내뱉어도,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이 업종에 내가 뛰어들려고 한다 또는 우리 기업상 이 회사가 꼭 필요하다, 산업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에 있는 회사를 우리가 꼭 하려고 한다, 여러 회사들을 지금 내가 검색하고 있다, 물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상당량의 주식을 사고 있는데 25%가 최대주주도 안 됐어요. 그런데 결론을 했더니 이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가 사기로 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순전하게 경영상의 이유로? 그러면 주가는 엄청나게 뛴 텐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그래서 증권거래법이…… 아까 선의와 악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악의는,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조항이 있는데 이 증권거래법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시세 조정은 아까 목적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이런 목적 조항이 없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그 자체가 시장을 교란시켰으면 저희가 주가 조작……

○조정훈 위원 객관적 사실이 됩니까, 아까 얘기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

○조정훈 위원 주식을 매매한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부정한 의도와,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목적 조항이 통상 증권거래법을 꿰뚫고 있는 철학인데 이거로만 가지고는 그걸 규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문을 지금 찾아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라 하는 것을 한 이삼 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어떠한 양태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시장을 교란했다고 해서 저희가 형사처벌 할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증권거래법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자본법에 굉장히 강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무슨 기조인지 말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아까 우리 휴식시간에 잠깐 내용 한 건데 M&A, 인수합병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여기 의무공개매수의 예외조항이 있다 그랬는데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않은 그게 있습니까, 조항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어디입니까?

○**소위원장 박상혁**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정훈 위원** 6페이지?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니까 전문위원, 표에 보면 예외 규정으로 나와 있는 이것은 조문상으로 어디 있을까요? 그것 여쭙보시는 것 같은데.

○**조정훈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다른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 기업 구조조정 등’ 이것 관련된 것.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17쪽입니다. 조문대비표 17쪽 맨 아래부터 시작해서 18쪽에 주요 내용 등이 나오는데요.

○**조정훈 위원** 어떤 법안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시행령에 위임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담보권을 실행해 가지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빼도 될 것 같고요.

○**조정훈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는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박상혁 의원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7쪽 맨 아래쪽 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등의 목적, 유형—18쪽으로 넘어가서—그 밖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강일 의원안, 박홍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면서 예시로 1호, 2호, 3호 등의 사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러니까 구조조정 목적이나 회생 목적이란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담보권 실행이란지 의도하지 않은 걸로 자기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25%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것은 다른 나라 입법례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규

정하는 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법에서 일부 확정적인 걸 정해 주시고……

○**소위원장 박상혁** 이강일 의원님 안처럼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저희한테 좀 위임해 주시면 예측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까 부위원장이나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상식적이거나…… 왜냐하면 특히 회생이나 워크아웃은 이걸 못 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명시적으로……

○**소위원장 박상혁** 이강일 의원님 안에 그게 있지요.

○**조정훈 위원** 그렇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박홍배 의원안 2호하고 3호가 그 내용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은 실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조항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저희가……

○**이강일 위원** 법조항에 그건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위임을 해 주는 거고.

○**조정훈 위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김형연 위원님 하면 이제 대략적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연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에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현행 공개매수 제도와와의 관계에 대해서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부개정안에는 준용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직접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 방식이 있는데 후자가 더 나은 것 같다고 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김형연 위원** 그러면 그 후자 방식에 의한다면 기존 우리의 현행 공개매수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행법에 쪽 134조 2항…… 133조는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이고 134조 이후에 쪽 적어 났어요. 온갖 절차와 방법 이런 걸 다 적어 났습니다. 그러면 적용대상에서만 좀 달리 규정하는 것뿐이지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당연히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겠지요? 그러면 각종 절차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김형연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김형연 위원** 그런데 지금 46면을 보면 이제 여러 개정안에는 현행 공개매수 제도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관련돼 가지고 현행법과는 달리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연 위원** 굉장히…… 안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특별히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개매수 제도나 의무공개매수 제도나 비난 정도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와 관련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제도 동일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의무공

개매수 제도의 특유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것으로 인한 제재를 별도로 규정하고 그것만 적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입법경제상 타당한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난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매수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나 미이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무겁게 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지금 대략 조문체계를 보시면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모습들이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5분만 정회를 하셨다가 이것하고 앞에 신용보증법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한테 마치기 전에……

○**소위원장 박상혁** 예.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46페이지 제재, 형사처벌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박상혁 의원님 안에 의하면 미이행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주식의 매수일 경우에 현행법 공개매수는 3년 이하, 1억 원 이하 돼 있는데 5년 이하 2억 원이하로 이렇게 강화돼 있잖아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송언석 위원** 그리고 공고기간 내 공고 미이행…… 이게 공고기간 내 공고 미이행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3년, 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존의 공개매수의 한 유형으로 의무공개매수를 지금 규정하려고 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강화된 처벌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은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소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입법경제가 불필요한 과한 제재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전체적인 기조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 43분입니다. 그사이에 교섭단체끼리 협의도 하고 하면서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일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서일준 위원입니다.

어저께 오늘, 이틀 동안 정말 힘드네요. 우리 정무위가 역시 민생법안 상임위답게 법안 하나하나를 진짜 꼼꼼하게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논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자본시장 관련된 법은 제가 제안을 하겠

습니다. 의무공개매수에 대해서 저희가 50 플러스 1을 기본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위를 구성을 해서 하되 다음 차기 법안소위에 제1순위로 상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또 오전에 했던 서금법은 논란이 있었던 기금 분야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몰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플러스 10년이 되니까 15년이 되는 거지요?

○서일준 위원 플러스 10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5년이니까 플러스 10년 해 가지고 15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현정 위원 그러면 2041년까지 하는 거예요?

○서일준 위원 2036년까지.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고 양당 간사 간 논의를 해서 다음 법안소위가 9월 15일 1소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2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한 달에 국회법이 정한 두 번의 법안소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법안들 공청회 등 해야 될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소위를 통해서 조금 더 내밀 있게 문안을 정리하고 조문 정리를 쪽 해서 그날 15일 날 일차적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법안들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토론을 같이 좀 말씀……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 사항이 아니구요.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서민의 금융 지원과 관련된 겁니까?

○박홍배 위원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법은 이렇게 정리하고 박홍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하고 오늘 긴 시간 토론을 했고 또 양당 간사님께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시겠다라고 한 것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이후에 쪽 있었던 M&A 사례들을 봤을 때 오늘 언급되었던 남양유업이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또 우리은행의 다올인베스트먼트 이런 M&A 사례들이 전부 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가 넘는 M&A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1주라고 저희가 정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주주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받지 못한다라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첫 법안소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배석하신 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 이 공간일 수밖에 없는데 경험이 많으신 다선 위원님들 또 당 지도부들도 계시고 위원님들하고……

저희는 다른 상임위 했을 때는 작은 회의실에서 했었거든요. 더 가까이 앉아 가지고 사실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 또 정부 측 의견들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 회의실이 좀 크다 보니까 마치 이게 공개회의처럼 카메라가 돌아가는 듯한 착각들을 자꾸 하면서 발언도 조금 길어지는 경향도 있고 약간의 충돌도 발생되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회의 장소를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저도 처음 초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 진짜 소회의실에서 법안소위를 하다가 여기 전체회의장에서 법안소위를 하니깐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서일준 간사님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장님과 함께, 거기는 너무 좁아서 너무 좀 답답한 면도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좌석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저희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4항 및 5항, 이상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지금 2항·4항·5항이 법안으로……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이인영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소위원장 박상혁 예, 그런 거지요? 제가 혹시라도 오해 있으실까 봐.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소위원장 박상혁 왜냐하면 앞에 기금이 들어가 있는 안들이 있고 기금이 안 들어가는 일몰과 관련된 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항·4항·5항, 이상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제1항 및 제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너무 법안소위가 길었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이틀간의 법안소위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고 내밀한 토론들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민생법안을 두고 계속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법안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대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또 서금원에서 나와 계시는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회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및 의정기록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재섭 김현정 김형연 민병덕 박민규 박상혁 박홍배 서일준 손명수 송언석
신동욱 이강일 조정훈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자본시장국장 변제호

서민금융진흥원

상임이사 유재욱

기획조정부장 김미혜

입시회의록